

건전한 재정의 공사로 되기 위하여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다. 검토결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조정의 당위성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요금의 인상은 전례로 보면 인상분은 시민의 가계부담으로 전가되었음

그러므로 향후에는 대중교통 운임요금 인상시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시내버스의 경우

- 지하철과 중복되는 적자 노선의 과감한 폐지와 버스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적자 기업의 퇴출 및 공공성 있는 새로운 노선 개발로 운송수익금을 증대시켜 요금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라도 버스업체의 분담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 서비스 및 경영개선 실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실시, 적·흑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의 차등 지급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버스업체에 경쟁원리의 도입기반을 다져야 할 것임

○ 지하철의 경우

- 건설부채는 정부와 시가 해결하고, 지하철 운영은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책임지고 경영하는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2003. 2. 11 시장 방침)에 따라 운임인상의 원인이 되는 수송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송수입 증대방안, 인력감축 및 비효율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지하철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특단의 경영개선이 있어야 함.
- 지하철의 수송원가는 현재 상태의 경영조건에 의한 비용을 기초로 한 자체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인력, 기타 비용의 과다계상요인이 있어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가 분석은 공인된 기관의 정확한 직무분석과 회계 처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아직까지는 운임수준과 수송원가의 괴리가 매우 커서 문제시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이나 향후 정확한 수송원가를 산출하여 요금의 산정이나 적자원인 적출하여 효율적인 경영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임

그러나 급변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누적된 운송업체(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 요금조정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대시민 서비스와 업계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시민이 호응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을 충분히 납득할 정책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 시민의 입장에서 요금조정이 빈번하면 행정의 신뢰도를 잃게 되므로 계속 반복적인 물가연동과 관련된 요금인상보다는 체계적인 운임제도 근거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안

요금조정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시내버스)

-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지하철),
 - 시·도지사가 운임범위를 결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버스운송사업자가·지하철운영기관이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신고제)

요금조정의 필요성

시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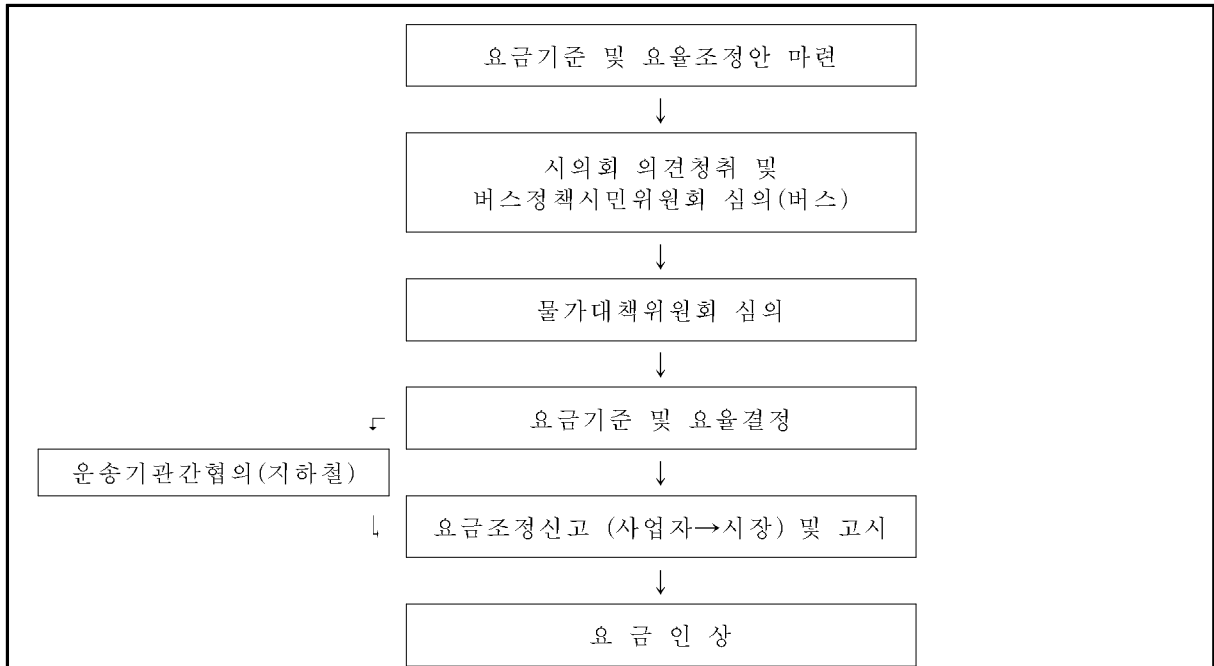
- '00. 7월 이후 2년 반 동안의 요금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을 감안하되 운송원가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최소폭으로 인상 필요
- 시내버스 노사간의 '02년도 임금협약기간 만료('03.1.31) 후에도 새 임금협상 미타결로 쟁의 중인 상태로서 시민불편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의 근로자 처우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버스요금 현실화 필요
- 인건비, 유류대,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요인과, 타 도시 요금수준과의 형평성 및 시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원가반영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버스업체 경영개선노력으로 흡수토록 유도

지 하 철

-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는 '02말 기준 5조 7,343억원이며, '02년 운영적자는 총 8,122억원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 ※ 지하철공사 3,757억원, 도시철도공사 4,365억원
- 현재 운임수준은 수송원가의 56.6%로 매우 낮아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9월에 기본요금 100원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되어 지하철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02.12.9.부터 심야운행시간 1시간연장 시행, 승강·환승 편의시설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지하공기질 개선, 열차소음개선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 지하철운임 조정요인 분석결과 1인당 529원의 운임인상 요인이 있으나, 국가의 물가안정시책과 어려운 서민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운임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요금조정 절차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요금실태 분석개요 및 조정안

시내버스

○ 서울서비스운송사업조합 신고 요금조정안

(현금/교통카드)

구 분		현 행 (2000. 7월 조정)	조 정 안			
			'01.12.28 신고안		'03.1.6 수정신고안	
			조정요금	인상률	조정요금	인상률
도시형 (지역순환 포함)	일 반 인	600원/550원	700원/650원	17%/18%	800원/720원	33%/31%
	중·고생 (회수권/카드)	450원/410원	600원/560원	33%/37%	600원/550원	33%/34%
	초등학생	250원/250원	300원/300원	20%/20%	300원/300원	20%/20%
일반좌석	일 반 인	1,200원/1,100원	1,500원/1,400원	25%/27%	1,800원/1,700원	50%/55%
	중·고생 (현금/카드)	1,200원/900원	1,500원/1,200원	25%/33%	1,800원/1,300원	50%/44%
	초등학생	900원/900원	(미기재)		(미기재)	
고급좌석	일 반 인	1,300원/1,200원	1,600원/1,500원	23%/25%	1,900원/1,800원	46%/50%
	중·고생 (현금/카드)	1,300원/980원	1,600원/1,300원	23%/33%	1,900원/1,400원	46%/43%
	초등학생	1,000원/980원	(미기재)		(미기재)	

○ 서울시의 운송수지 검증결과에 의한 운송원가 - 도시형 기준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용역보고서 제시요금 수준	교통국 조정		비 고 (‘03년도 추가 원가상승요인)
			‘02년도	‘03 추가요인 반영시	
일반인현금	600	714	661	711	○ 인건비 : 10%내외 인상 가정시 - 노조측 인상 요구안 : 기본급 13.8% 등 18.8%(도시형 기준 71원 인상요인) * 과년도 금인상률 : ‘01년 5.5%, ‘02년 6.5% ○ 경유가 : 버스업체 경영실사 대상시기인 ‘02.9월말 대비 9% 인상 ○ 기타 물가 :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3% 적용 *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의 ‘03 물가상승률 예상치 : 3.4% * 과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01년 4.1%(서울 4.4%), ‘02년 2.7%(서울 3.3%)
일반인카드	550	664	611	661	
중·고생카드	410	488	452	502	
초등학생	250	297	276	326	

○ ‘03년도 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조정(안)

(현금/교통카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비 고	
도시형 (지역순환 포함)	일 반 인	600원/550원	700원/650원	16.7%/18.2%	카드할인액 충전유지
	중·고생 (회수권/카드)	450원/410원	550원/490원	22.2%/19.5%	일반인 대비 21%/25% 할인
	초등학생	250원/250원	300원/300원	20.0%/20.0%	일반인 대비 57%/54% 할인
일반좌석	일 반 인	1,200원/1,100원	1,300원/1,200원	8.3%/9.1%	카드할인액 충전유지
	중·고생 (현금/카드)	1,200원/900원	1,300원/1,000원	8.3%/11.1%	일반인 대비 0%/17% 할인
	초등학생	900원/900원	900원/900원	-	일반인 대비 31%/25% 할인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륜	비 고
고급좌석	일 반 인	1,300원/1,200원	1,400원/1,300원	7.7%/8.3%	카드할인액 종전유지
	중·고생 (현금/카드)	1,300원/980원	1,400원/1,100원	7.7%/12.2%	일반인 대비 0%/15% 할인
	초등학생	1,000원/980원	1,000원/1,000원	- /2.0%	일반인 대비 29%/23% 할인

지 하 철

- 운임수준분석
 - 승객1인당 영업수익 650원
 - 승객1인당 수송원가 1,148원
 - ※ 운임수준 : 수송원가의 56.6% (운임현실화율)
- 인상필요액 : 529원 (보전운임수준 1,129원 - 기본운임 600원)
 - ※ 보전운임수준 1,129원
 - = [수송원가 - (평균수익 - 평균운임)] × (기본운임 ÷ 평균운임)
 - = [1,148원 - (650원 - 565원)] × (600원 ÷ 565원)
- 운임범위 조정(안)
 - 기본운임 : 600원 → 700원 이하(16.7% 인상)
 - 2구간운임 : 700원 → 800원 이하(14.3% 인상)
 - 이동구간제 : 5km마다 80원 → 현행유지

구 분	현 행	조 정
구 역 제	- 1구간 : 600원 - 2구간 : 700원	- 1구간 : 700원 이하 - 2구간 : 800원 이하
이동구간제	- 10km까지 : 기본운임 - 초과 5km마다 80원 가산	- 현행유지

- ※ 할인을 및 할인액 현행유지
 - 교통카드 할인율 : 중고생 20%, 일반 8%
 - 교통카드 환승할인액 : 50원
 - 초등학생 할인율 :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03. 2.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
- 의결(처리건수) : 8건(원안동의 7건, 조건부동의 1건)